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39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9.

발의자 : 노종면 · 정동영 · 김현

이훈기 · 김문수 · 조계원

이해민 · 최민희 · 한민수

조인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,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음.

그러나,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 · 논평에 대한 심의가 이른바 ‘정치심의’로 변질되어, 오히려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음.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, 보도 · 논평 심의 기준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.

이에, 보도 · 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, 아동 · 청소년 보호,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, 보도 · 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(안 제33조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보도·논평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단, 보도·논평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는 제2항 각 호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제외한다)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33條(審議規程) ① (생 략)</p> <p>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10. 報道·論評의 공정성·공공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1. ~ 17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③ ~ ⑥ (생 략)</u></p>	<p>第33條(審議規程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11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보도·논평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단, 보도·논평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는 제2항 각 호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제외한다)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~ ⑦ (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</u></p>